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-1651호

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

우리 구 공동 213-27 일대 『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』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「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」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(선임)을 위해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2일
구로구청장

1. 등록기간 : 2024.09.26.(목) ~ 2024.09.27.(금) 10:00~17:00

※ 점심시간(11:30~13:00) 제외

2. 등록장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
(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, 구로구청)

3. 선출(선임) 인원 수

가. 선출 : 부위원장 1명

나. 선임 : 위원 49명(예비위원 5명 추가 선임, 총 54명)

4. 등록 시 제출서류

가. 부위원장 후보자

- 1)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 <별지 제1호 서식>
- 2) 후보자 추천서 1부. <별지 제3호 서식>
: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 추천 필요 및 추천서는 구청에서 직접 수령(직인필요)
(※ 토지등소유자 1인의 중복 추천 불가)
- 3)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및 위원 선임에 따른 이행 각서 1부. <별지 제4호 서식>
- 4)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. <별지 제5호 서식>
- 5) 범죄경력·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. <별지 제6호 서식>
- 6) 선거공보 작성(안) 1부. <별지 제7호 서식> 및 후보자 정견서 1부. <별지 제8호 서식>
: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함(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)
- 7)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- 8)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.
- 9) 주민등록표등본 1통.
- 10) 가족관계증명서 1통.
- 11)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. <별지 제2호 서식>
- 1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(적격요건 충족을 사업자로 하는 경우)
- 13)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 1부.(입후보 동의서)

나. 위원 후보자

- 1)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 <별지 제1호 서식>
- 2) 후보자 추천서 1부. <별지 제3호 서식>
: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 추천 필요, 추천서는 구청에서 직접 수령(직인필요)
(※ 토지등소유자 1인의 중복 추천 가능, 위원 입후보자는 타 위원 입후보자 추천 불가)
- 3)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및 위원 선임에 따른 이행 각서 1부. <별지 제4호 서식>
- 4)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. <별지 제5호 서식>
- 5) 범죄경력·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. <별지 제6호 서식>
- 6)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예비위원 승낙서 1부. <별지 제9호 서식>
- 7)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- 8)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.
- 9) 주민등록표등본 1통.
- 10) 가족관계증명서 1통.
- 11)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. <별지 제2호 서식>
- 1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(적격요건 충족을 사업자로 하는 경우)

제출서류 중 별지서식은 구로구청 신관2층 주택과, 구로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guro.go.kr>) '구로알림 > 구로소식 > 고시공고' 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

5. 후보자 등록 요건

가. 부위원장 후보 : 토지등소유자(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은 자)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
- 1)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(다만, 거주 목적에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거주로 본다)
- 2)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

나. 위원 후보 : 토지등소유자(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은 자) 중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
다.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기준

▶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①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⑥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·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

6. 후보자 자격 심사 기간 : 2024.9.30.(월) ~ 2024.10.7.(월)

※ 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7. 부위원장 선출 일정(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)

가. 기호 추첨 및 배정: 2024.10.8.(화) 10:00 / 구로구청 주택과

나. 선거일, 후보자 확정 및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: 2024.10.14.(월)

다. 선거 공고: 2024.10.17.(목)

라. 후보자 투 · 개표 참관인 신청<별지 제10-1호, 제10-2호 서식>

- 1) 일 시: 2024.10.18.(금) 10:00~15:00

※ 점심시간(11:30~13:00) 제외

- 2) 접수처: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

마. 서면투표 기간: 2024.10.12.(월)~2024.10.25.(금)

※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함.

바. 서면(우표)투표 접수: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

사. 선거일: 2024.10.28.(월) 10:00~17:00

아. 선거 장소: 수궁동주민센터(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5길 32)

8. 부위원장 선출 방법

가. 선거를 통해 선출(1명)

-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, 서면 또는 현장 투표로 선출
(후보자 중 다득표자 선출 /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)

9. 위원 선임 일정(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)

가. 후보자 확정 공고: 2024.10.14.(월)

나. 공개 추천: 2024.10.30.(화)

10. 위원 선임 방법

가. 공개모집 후 <위원 할당 기준>에 따라 선임

- 1개 할당 기준에 다수인 경합 시 공개 추천
- 입후보자 49명 이하 시에는 미추첨(전원 선임)

※ 세부적인 <위원 할당 기준>은 추후 ‘후보자 확정 공고’ 시 안내.

< 위원 할당 기준 >

구 분		위 원 수		
번 호	건축물명	토지등 소유자	위 원 비례율	할 당 위원수
①	우신빌라	815명	98% (815/830)	48명
②	동광빌라	15명	2% (15/830)	1명
총계		830명	100% (830/830)	49명

※ 위원 수 산정은 토지등소유자 수 비율에 따름

※ 위원은 주거유형, 동별, 통·반별, 가구별 및 시설의 종류,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동별 1인 이상으로 하되,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라 조정하여 선임할 수 있음.



11. 위원 등의 활동 기간: 조합설립인가시까지**12. 위원 등의 직무**

가. 위원 등은 위원장과 함께 주민협의회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등 주민협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.

※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.

나. 위원 등은 동일한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·추진위원회 또는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·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.

다. 부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대행함.

13. 기타 사항

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해촉함.

- ①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②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
 - ③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·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회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④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※ 부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” 제8조에 따라 선출하고, 위원이 궐위된 경우 추가 선임된 예비위원 순번에 따라 보궐

나. 주민협의회 회의 등의 사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
※ 참석수당 지급 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한 위원에 한함

14. 문 의: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(☎ 02-860-2940)

붙임: 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서식 각 1부.